



‘믿음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정부기업’

우정공무원교육원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공휴일 구내식당 운영 지침 변경

1. 관 련

가.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의 제한(주 52시간 법정근로시간 준수)

나. 지원과-431(2006. 1. 27., 공휴일 구내식당 운영계획 변경)

2. 기존 공휴일 구내식당 운영 지침인 『잔류교육생이 20인 이상인 경우에 운영한다.』
는 그 근거가 현실과 맞지 않고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위배할 우려가 있어 아래와 같이
운영 지침을 변경하고자 합니다.

가. 운영지침 변경(안)

구 분	기존 지침	변경 지침
공휴일 구내식당 운영 기준	잔류 교육생 급식인원 20인 이상일때	공휴일 잔류 교육생이 40인 이상일 때 ※ 단, 40인 이상의 식수인원이 통보되더라도 법정근로시간 준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교육지원과장 결정하에 운영을 아니할 수 있다.
구내식당 비운영시	-	교육원에서 발행한 식권을 이용 외부식당에서 식사 제공할수 있다 * 1식당 식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따른다.

나. 지침 변경시 고려사항 : 비교분석에 따른 상세 결과는 붙임 참조

- 1) 비용 : 구내식당 운영 및 외부식당 이용에 따른 비용 비교 분석
- 2) 통보 식수와 실제 식수 인원간의 평균 차이
- 3) 주 52시간 법정근로시간 준수 여부

다. 시행일 : 2018. 9. 3(월) 부터

붙임 : 공휴일 구내식당 운영지침 변경(안) 1부. 끝.

★주무관

이재관

우체국문화팀장

정옥자

교육지원과장

문성용

원장

08/31
이영구

협조자

시행 교육지원과-4754 (2018.08.31.) 접수 ()

☎ 31068 충남 천안시 동남구 양지말1길 11-14(유량동) / <http://9832054.koreapost.go.kr>
전화 [041-560-5136](tel:041-560-5136) /전송 041-560-5159 / 9832054@koreapost.go.kr / 공개